

	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3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교수학습 연구지원 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와 학습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연구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속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직무범위) 센터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, 센터의 운영지침을 따른다.

1. 교수-학습 방법 교육 및 활용 지원
2.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
3. 교수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
4. 교수·학생의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위한 지원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 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4조(센터장) ① 본 센터의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기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구성 및 기간) ①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에 운영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 수립, 평가 및 환류
2.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심의
4.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
5. 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의 심의

	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3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교수학습 연구지원 센터

6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
7. 기타 사업 운영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-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③ 심의사항은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개정) ①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지원금, 대학 및 대외 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- ② 센터의 수익금 발생 시 전액 교비로 전입한다.
- ③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3		
		제정일	2013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교수학습 연구지원 센터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